

의안 번호	1788	[울산광역시 중구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6. 30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30.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9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)

가. 제안이유

-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·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 :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
→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 조례
-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: 전산 추첨 방법 삭제
(안 제4조제1항제1호)
- 지원방법 확대(안 제5조제1항제4호)
 - 구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, 수수료 감면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·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방법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

-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 방법 확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